202.59호

행 정 명 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 202호를 발령함**에 따라**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**에 따라,**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뉴욕주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행정명령 202.36호, 202.37호, 202.46호, 202.47호가 연장된 바와 같이 및 행정명령 202.54호로 발령된,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일시 중지 및 수정, 지침을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9월 27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합니다.

- 부동산세법(Real Property Tax Law) 제925-a항에 의거하여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
- 또한 2020년 법률(Laws of 2020) 142장에 의해 대체된, 전화 또는 가상 정당 임명 대회를 허용하는 지침.

또한, 행정부 법 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에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9월 27일 일요일까지 발행합니다.

- 보건부(Commissioner of Health) 커미셔너는 독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 양성 사례의 수를 평가할 가장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지역에서 시기적절한 접촉 추적 노력이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코로나19 및 독감 사례의 시기적절한 검사 및 보고를 위한 종합 주전역 절차를 비상 규정으로 개발할 것입니다.

2020년 8월 2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

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